

2016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신한카드 주식회사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위 성 호

위 성 호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4p
2. 이사회	8p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1p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62p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78p
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89p
7. 감사위원회	93p
8. 리스크관리위원회	112p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21p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122p
2. 보수체계	130p

[첨부] 관련 규정 138p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209p
---------------------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다양성/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그 원칙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배구조 투명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회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확인 웹페이지 : 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www.crefia.or.kr(여신금융협회))

(2) 지배구조 건전성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8월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을 정비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안정성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내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2016년말 기준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 57%)

그리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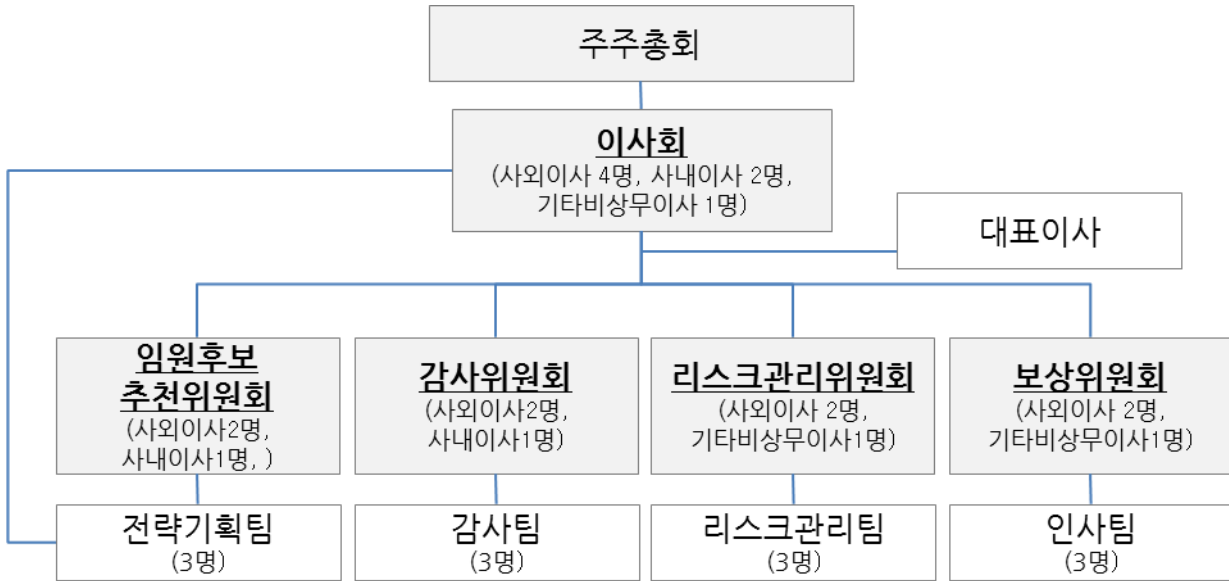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기준 금융분야 3명,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

또한, 주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본인추천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6년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사 창립의 근간인 재일동포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자가 당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로 구성된 총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2016년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	-------	----	------------	-------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목표 수립 · 정관 등 중요규정 제/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지배구조 정책,원칙 수립 ·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등 	7명 (사외이사 4명)	위성호 (사내이사)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내부 규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대표이사 후보의 추천 ·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3명 (사외이사 2명)	김동환 (사외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감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사후조치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의 선임/평가 등 	3명 (사외이사 2명)	성재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김동환 (사외이사)	-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
보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평가 및 보상안 확정 · 성과보상체계 결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박평조 (사외이사)	-보상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7. 보상위원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 의 구체적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위험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평가/최종 승인하며,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경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2017년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017년 경영계획은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 워크샵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실무자 워크샵을 진행 하였으며, 2016년 10월 24일 유관 임·부서장 논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워크샵에서 2017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29일 개최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전략방향은 DT(Digital Transformation) Drive로 설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사적 디지털 Transformation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 인터넷뱅크 실질적 대응력 강화, 개방형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사업 질·양적 성장가속화입니다. 관련내용으로 해외법인 성공적 안착 및 추가진출 추진, 그룹 시너지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체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셋째, Big Data 경영 2.0 본격전개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고도화, 신기술 융합 역량 강화, 빅데이터 컨설팅 수익 창출력 극대화가 있습니다.

넷째, 신사업 성과 창출 가시화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비회원 대상 영업 확대, 오토금융 자산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체계 고도화가 있습니다.

다섯째, 확실한 마켓 리더십 구축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전략적 비용절감 가속화, 위기대응/잠재 리스크 관리강화, 회원기반 절대우위 공고화, 가맹점마케팅 전략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섯째, 신한Way 기반 강한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체화, 창조적 금융을 촉진하는 열린 문화 구축, 신한Way에 기반한 미래 인재육성이 있습니다.

(나) 예산 및 결산승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12월 29일 개최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 총예산은 8,455억원으로 전년대비 524억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경비예산 7,071억원, 투자/기부금예산 784억원, 예비비 600억원입니다.

당사는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6년 1월 초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 4일 개최한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를 거쳐 2016년 3월 23일 개최된 제1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6,928억원으로 전년대비 5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은 영업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421억원 증가한 23.1조원입니다. 아울러 배당금은 과거 LG카드 인수관련 고배당 부담부 우선 상환 등을 위해 9,0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동일 내용을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조직· 인사· 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라)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는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지배구조법 시행 대비 2016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마)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아목에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또는 이사의 경업승인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당사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가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과 역할을 지속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바) 내부통제기준 수립 ·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준수/건전경영/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수립/변경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감사위원회가 최종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2016년 2월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평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평가 등 총 194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적정(양호)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매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2015년 12월 개최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2017년 리스크한도 설정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리스크한도를 27,6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리스크한도는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리스크 26,100억원, 금리리스크 2,500억원, 운영리스크 2,800억원, 시장리스크 3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 경영승계업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3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지배구조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지배구조법 제12조)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9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연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2016년말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정관 제 26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6년 2월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영진 기타비상무이사가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1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8월 제4차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동 주주총회에서 1년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이사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사의 공통된 자격요건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5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동법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아울러,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법 제13조(이사회 의장)에서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카드업이 일반 금융업에 비해 영위하는 업무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상근직으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이사회 독립성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1인(박평조 사외이사)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된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한 사유는,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시 최우선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며,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회사에 대한 견제수준을 제고 시키고자 함입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위성호(대표이사)

위성호 대표이사는 2013년 임시주주총회일(2013.8.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8월 26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	-------

From	To	
2013. 8월	현재	신한카드 사장
2013. 5월	2013. 8월	신한카드 부사장
2011. 4월	2013. 5월	신한은행 부행장
2008. 8월	2011. 4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07. 8월	2008.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담당 상무
2007. 5월	2007.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팀장
2006. 4월	2007. 5월	신한금융지주 HR팀장
2004.12월	2006. 4월	신한금융지주 통합기획팀장
2004. 1월	2004.12월	신한은행 PB사업부장
2002. 8월	2004. 1월	신한은행 강남 PB센터장
1985.2월		신한은행 입행

위성호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 이석우(상근감사위원)

이석우 이사는 201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일(2016.6.3일)에 김성화 이사 후임으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6월	현재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2014. 6월	2016. 6월	고려휴먼스 대표이사
2013. 5월	2014. 6월	금융감독원 감사실국장
2012. 5월	2013. 5월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2009. 3월	2012. 5월	금융감독원 비서실장
2008. 6월	2009. 3월	금융연구원 파견(실장급)
2007. 4월	2008. 6월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사1팀장
2005. 7월	2007. 4월	금융감독위원회 대전지원 민원팀장
1998. 4월	2005. 7월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 인사팀장
1989. 9월	1998. 3월	재무부
1984. 9월	1989. 9월	동력자원부

이석우 이사는 당사의 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선임사외이사 박평조(사외이사)

박평조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3.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결산 기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2002. 4월	2004. 3월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박평조 이사는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대표해 선임사외이사로서 활동 중이며,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보상위원회 위원장(2015.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2014.3월~)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이사 김동환(사외이사)

김동환 이사는 2013년 정기주주총회일(2013.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6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1997.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11월	현재	은행법학회 부회장
2011. 7월	2012. 6월	금융학회 부회장
2010. 5월	2011.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2009. 2월	2011. 2월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2008. 10월	2009. 10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7. 3월	2009. 3월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2007. 3월	2010.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
2005. 7월	2007.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2002. 4월	2004. 3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1998. 4월	2006. 3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
1990. 4월	1997. 3월	일본 문부성 국비연구원
1986. 7월	1990. 3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위원장(2013.3월~2016.3월), 보상위원회 위원(2015.3월~2016.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2016.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5.3월~2016.7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6.8월~)으로 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성재호 이사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1월	현재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5. 1월	2015. 12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14. 1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문위원
2014. 1월	현재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2012. 1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
2011. 2월	2013. 1월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2009. 3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1월	2010.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9. 1월	2009. 12월	국제법 평론회 회장
2009. 1월	2010.12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8. 1월	2009.12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07. 1월	2008.12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7. 1월	2009.1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2005. 2월	2007. 1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2005. 1월	현재	NIS 국제범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2. 10월	2009. 2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교수
1994. 3월	2002.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1993. 8월	1994. 2월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위원장(2015.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5.3월~2016.7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6.8월~)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이사 이성한(사외이사)

이성한 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2016.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5. 9월	2016. 8월	과테말라 KSP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2014. 9월	2015. 9월	우즈베키스탄 KSP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2013. 8월	2014. 9월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0. 5월	2013. 8월	국제금융센터 원장
2009. 2월	2010. 5월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2008. 3월	2009. 2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2007. 12월	2008. 3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대외경제심의관
2006. 12월	2007.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2004. 8월	2006. 12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2001. 5월	2004. 8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2016년 3월부터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⑦ 이사 임영진(기타비상무이사)

임영진 이사는 201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16.2.4)에 임보혁 이사 후임으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결산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이사의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1월	현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3. 1월	2016. 1월	신한은행 부행장
2011. 8월	2013. 1월	신한은행 부행장보
2010. 1월	2011. 8월	신한은행 경기동부영업본부장
2009. 2월	2010. 1월	신한은행 영업추진부장
2008. 4월	2009. 2월	신한은행 영업부장
2000. 3월	2008. 4월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1986. 2월		신한은행 입행

임영진 이사는 기존 임보혁 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자격을 동일하게 승계받아 2016.2월부터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	임기 만료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위성호	대표 이사	이사회 의장	·신한지주 부사장 ·신한은행 WM그룹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신한카드 대표이사	‘13.8.27	‘17.8.26	42개월	임추위
박평조	사외 이사	선임 사외이사, 보상위 위원장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4.3.31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35개월	보상위 리스크 관리위
김동환	사외 이사	리스크 관리위 위원장, 임추위 위원장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3.27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47개월	리스크 관리위 임추위

성재호	사외 이사	감사위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15.3.26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23개월	감사위 임추위
이성한	사외 이사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과테말라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16.3.23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11개월	감사위 보상위
임영진	기타 비상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신한은행 전무 ·신한은행 부행장보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16.2.4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13개월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이석우	사내 이사	상근 감사 위원	·금융감독원 비서실장 ·금융감독원 감사실국장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16.6.3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9개월	감사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총 12회(정기이사회 총 4회, 임시이사회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8%입니다.

2016년 7월에 개최된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법(8.1일)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관/지배구조 내부규범/이사회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신설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12월 개최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미얀마 리테일 금융시장에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소집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전략방향(DT Drive) 및 세부 핵심전략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1.12일(火) 10:00~11:00 [안건통지일 `15.12.29일(火)]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보혁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① 신한카드 2016-1 자산 유동화 거래 및 관련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당사 영업 및 차입금 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나)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4일(木) 14:30~14:40 [안건통지일 1.21일(木)]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보혁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1차 임시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201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안건 및 소집에 대한 승인 - 임영진 이사 선임

(다) 2016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4일(木) 14:50~16:20 [안건통지일 1.21일(木)]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영진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영진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5년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이사회內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제30기 결산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이사 아닌 경영진 임명 요청 동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경영진 관련 諸규정 개정 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등기지점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 지배인 임면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임영진 이사 신규 선임에 따른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② 제30기 결산실적 확정을 위한 재무제표안에 대한 결의
 ③ 부사장(경영진) 3인 선임 - 조성하 부사장, 김영호 부사장, 박영배 부사장
 ④ 경영진 평가 및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
 ⑤ 등기지점 폐지 및 조정(안) 승인 (15개지점 → 9개 지점)
 ⑥ 업무 변경으로 인한 지배인 해임 및 선임

(라) 2016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24(수) 09:40~11:30 [안건통지일 2/12(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영진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김경림	임영진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15년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보상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	특이의견 없음							
4. 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미얀마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정관 개정 승인
 ②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및 소집에 대한 승인
 ③ 미얀마 해외 금융 자회사 설립 승인(최소 자본금 5만불 납입)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안) 승인

(마) 2016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3/23(수) 16:30~17:40 [안건통지일 3/9(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보상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5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5년 4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6년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신한인도파이낸스 지급보증 제공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선임 - 박평조 사외이사

②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신규 이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③ 2016년 사외이사 보수 한도 설정 승인

④ 신한인도파이낸스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승인

(바) 2016년 제2차 정기이사회 : 5/27(금) 09:30~11:00 [안건통지일 5/13(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신한인도파이낸스 에스프로 계약 해지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201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6년 1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6년 제2차 임시주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총회에 관한 사항								
③ 신한인도파이낸스 자본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미얀마 법인 자본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도이치 파이낸셜 렌탈 자산 인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 2016년 하반기 계열사 간 거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정관 영위업무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추가

- ② 상근감사 선임 및 정관 일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 ③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53.5억원 증자 승인
- ④ 미얀마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300만불 증자 승인
- ⑤ 도이치 파이낸셜 렌탈 자산 인수(인수 추진가격 77억원) 승인
- ⑥ 2016년 하반기 당사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사)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7/26(화) 08:40~09:40 [안건통지일 7/12(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①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6년 제3차 임시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경영진 임명요청 동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채권발행 일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의결안건 내용 : ① 지배구조법 제정(8.1일)에 따라 당사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안) 승인
 ② 정관 일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③ 신설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④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임 - 임석재 상무
 ⑤ 사채의 모집을 위한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승인

(아)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8/23(화) 10:30~11:10 [안건통지일 8/9(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6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6년 2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5. 보상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대표이사 선임(위성호 사장)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자) 2016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10/31(월) 09:20~09:40 [안건통지일 10/17(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특이의견 없음								

실적 보고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5차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②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 지광수 상무

(차)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11/11(금) 14:00~15:00 [안건통지일 10/28(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6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MOU이행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5년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5. 2016년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계열사간 거래 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재선임된 성재호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② 2016년 하반기 추가 내역 및 2017년 상반기 한도승인에 대해 이사회 승인

(카) 2016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12/8(목) 10:00~11:00 [안건통지일 11/2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	----------	--	--	--	--	--	--	----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① 신한카드 2017-1 자산유동화 거래 및 관련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당사 영업 및 차입금 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타) 2016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12/29(목) 10:40~11:50 [안건통지일 12/15(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박평조	김동환	성재호	이성한	임영진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6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5. 2016년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7년 경영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이사회 등 운영실적 평가 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경영진 임명요청 동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2017년 전략방향, 핵심전략과제 및 재무계획에 대해 승인

- ② 지배구조법에 의거,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안) 결정
- ③ 경영진(부사장) 선임 - 조성하 부사장
- ④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 이영민 상무

라. 평가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평가 관련 : 본 연차보고서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2. 보수체계 참조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영하였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합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2016년 8월 1일부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내위원회로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 감사위원 후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은행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관계법규 또는 내규 상 적극적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자문기관, 지원부서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6.8.1 이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위성호	상임이사	위원장	2016.3.23	`16.8.26
김동환	사외이사	위원	2016.3.23	`16년 결산기 주총
성재호	사외이사	위원	2016.3.23	`16년 결산기 주총

<2016.8.1 이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동환	사외이사	위원장	2016.8.1	`16년 결산기 주총
성재호	사외이사	위원	2016.8.1	`16년 결산기 주총
위성호	상임이사	위원	2016.8.1	`17.8.26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4.최고경영자 경영승계-나.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

대표이사 자격요건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은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본 연차보고서 4.대표이사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③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④최종후보자 추천절차, ⑤경영승계절차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등(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의 경력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임원 업무 수행 평가 방식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내용을 당사 보상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지주회사 등 상위 조직 단위의 업무 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상임감사위원의 평가목표설정 및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합니다.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사회회의 결의로 확정합니다.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사회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정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당행과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등 2016년에 총5회 개최 되었으며, 부의된 결의안건 9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개최 내역

(가) 2016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2.24일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성재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가결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사추위 위원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나) 2015년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6.3.23일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성재호	김동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위성호 상임이사 호선 추천)	수락	추천	재추천	가결

(다) 2016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7.26일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위성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김동환 사외이사 호선 추천)	수락	추천	재추천	가결

(라) 2016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8.23일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위성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의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마) 2016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10.31일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위성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성재호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가결
2.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석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의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9일 개최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1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 위원 전원에게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1) 운영평가 :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2) 역할평가 :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위성호

② 출생연도 : 1958년

③ 출신학교 :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④ 경력

- 2004. 1 신한은행 PB사업부장

- 2006. 4 신한금융지주 HR팀장

- 2007. 8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담당 상무

- 2008. 8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2011. 4 신한은행 부행장
- 2013. 5 신한카드 부사장
- 2013. 8 신한카드 사장 (現)

(나) 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다) 후보자 추천 사유

위성호 후보자는 30여년간 은행, 지주, 카드사에 근무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영업, 인사, 기획, 지주회사에서는 통합 기획, HR,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성호 후보자가 Big Data 경영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신한카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업무 추진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책임자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여 법률요건 등을 검증하고 신한카드 사장 후보로 중임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016년 8월 23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위성호 사장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임기 1년의 당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중임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2-1) 감사위원 후보 이석우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이석우

② 출생연도 : 1958년

③ 출신학교

- 공주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 학사

④ 주요경력

- 1991. 7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 1998. 4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 인사팀장
- 2005. 7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민원팀장
- 2007. 4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사1팀장
- 2008. 6 금융연구원 파견 (실장급)
- 2009. 3 금융감독원 비서실장
- 2012. 5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 2013. 5 금융감독원 감사실국장
- 2014. 6 고려휴먼스㈜ 대표이사
- 2016. 6 신한카드 상근감사(現)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석우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동환 사외이사입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6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석우 이사와 2013년 사외이사 및 2016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이석우 이사는 금융감독원 비서실장/총무국장/감사실국장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위원으로서 향후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석우 감사위원 후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10월 31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석우 이사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2) 감사위원 후보 이성환

본 추천은 「지배구조법」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및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진행한 사항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이성한

② 출생연도 : 1957년

③ 출신학교

- 성동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④ 경력

- 2001. 5.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 2004. 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 2006. 12.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 2008. 1.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 2008. 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 2009. 2.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 2013. 5. 국제금융센터 원장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성한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동환 사외이사입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6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성한 사외이사와 2013년 사외이사 및 2016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자 추천사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이성환 이사는 기획재정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위원으로서 향후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이성환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등을 근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성환 감사위원 후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10월 31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성환 이사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3-1) 사외이사 후보 김동환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16.8.1) 이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김동환

② 출생연도 : 1960년

③ 출신학교

- 배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④ 주요경력

- 2005. 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 2007. 3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 2009. 2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 2010. 5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 2011. 7 금융학회 부회장
- 2008. 11 은행법학회 부회장 (現)
- 1997. 4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전북은행 사외이사(2007.3~2010.3)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3년3월27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6년 기준) : 제30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17년 리스크 한도 설정, '17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2회 중 12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3회 중 3회, 보상위원회 2회 중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중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참석률 100%)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동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3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김동환 이사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 활발한 대외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3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동환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도 경제학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 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동환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동환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전문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3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김동환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10시간이 소요되는데, 김동환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2월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2) 사외이사 후보 박평조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16.8.1) 이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박평조

② 출생연도 : 1943년

③ 출신학교

- 와세다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④ 경력

- 1992. 3. 샤프로 신용금고 총대표
- 1997. 6. 제일 대한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 1997. 8.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 2002. 4. 샤프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 2006. 3.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 2009. 7. 제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2003.2~2004.3)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4년3월31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6년 기준) : 제30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 '17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2회 중 11회 참석 (참석률 92%)
- 이사회內위원회 참석수 :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중 7회, 보상위원회 4회 중 4회 (참석률 100%)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박평조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위성호 사장입니다. 당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4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평조 사외이사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주)무라오카식품, 미마츠기업등의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박평조 사외이사는 성공적인 회사경영 전문성, 재일동포 사회 리더로서의 경력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박평조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㉓ 전문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본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박평조 후보자는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1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금융회사 CEO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2월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3) 사외이사 후보 이성환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16.8.1) 이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이성환

② 출생연도 : 1957년

③ 출신학교

- 성동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④ 경력

- 2001. 5.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 2004. 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험총괄과 과장

- 2006. 12.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 2008. 1.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 2008. 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 2009. 2.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 2013. 5. 국제금융센터 원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2014.5~2017.5)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6년3월23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6년 기준) : 제30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17년 감사 계획,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 '17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7회 중 7회, 보상위원회 2회 중 2회(참석률 100%)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성한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위성호 사장입니다. 당시 이성한 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및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바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6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성한 사외이사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성환 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및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이성환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성한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전문성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이성한 후보자는 그 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㉔ 총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1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신규 선임 사외이사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없음

(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2월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4) 사외이사 후보(감사위원 후보) 성재호

본 추천은 「지배구조법」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및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분리선임)에 적합하도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진행한 사임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성재호

② 출생연도 : 1960년

③ 출신학교

- 청구 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박사

④ 경력

- 1993. 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 1994. 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

- 1997. 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現)

- 2005. 2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 2007. 2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 2008. 8 국제법평론회 회장

- 2009. 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2011. 1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 2015. 1 제42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2016. 1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외이사(2016.3~2019.3)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5년3월26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6년 기준) : 제30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17년 감사계획,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 '17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2회 중 12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內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11회 중 1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중 4회 (참석률 100%)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재호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동환 사외이사이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동환 사외이사입니다. 당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바 신한카드 주식회사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6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 선임된 성재호 사외이사와 2013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 2013년 사외이사 및 2016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성재호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성재호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전문성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성균관대 교수,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성재호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2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법조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2016년 2월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재호 사외이사는 2016년 10월 31일 선임되었으나, 이는 지배구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선임으로 자격요건 검토결과는 상기 '16.2월 보고서와 동일함에 따라 생략함.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6년 2월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31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성재호 사외이사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동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은행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자문위원 경험과 금융업 관련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금융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자문위원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2) 사외이사 박평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재일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기업경영, 샷포로 신용금고 대표,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의 경험과 일본 카드시장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기업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공적인 기업경영, 재일동포 사회내 리더 역할 수행
라. 충실성	○	해외(일본) 거주 불구, 이사회 적극 참여

(3) 사외이사 성재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 하는 등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법률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국제법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연구/대외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4) 사외이사 이성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성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성환 이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의 오랜 기간의 공직 경력 및 국제금융센터 원장,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재정분야 공직 경력 및 다양한 고문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동환

(가) 활동내역

김동환 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회(`16.1~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보상위원회 2회(`16.1~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3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5.2.4일 이사회에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업무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회사 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보강해서 감사 역량 강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2.24일 이사회에서는 미얀마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미얀마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여러 선진

국의 투자처로서 각광 받고 있지만 무상원조 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잘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초기에는 지나치게 투자 마인드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현지에 선진 금융 시스템을 전파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회공헌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이용과 관련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그룹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고객 정보수집 단계에서 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과잉 정보수집은 지양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3.23일 이사회에서는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최근 변화되고 있는 기업계 카드사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자금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플랜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5.27일 이사회에서는 온라인 펀드판매 사업 개시와 관련해서 펀드판매가 본격화 되면 불완전 판매 및 고객 민원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준비단계부터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인 자본증자와 관련해서 해외법인 운영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관리 업무, 영업인력 구성 시 본사 직원의 파견과 현지인력 채용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7.26일 이사회에서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의 역할 정의 시,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정확한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업무 분장 미비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1.11일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금리 전망이 기관에 따라 상이한 만큼 면밀한 분석, 빠른 대처를 통해 자금 조달 규모, 타이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2.29일 이사회에서는 2017년 부터는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시작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동환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110.7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3,354,839	

기본금	37,354,839	월기본급 350만원 (16.1~3월 주총일) 300만원 (16.3 주총일~12월)
상여금		
기타 수당	10,0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6,000,000	감사추 위원장(1~3월)/ 리스크관리추 위원장(3~12월) 月수당 50만 * 1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2) 사외이사 박평조

(가) 활동내역

박평조 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보상위원회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1회 불참(1.12일 이사회)은 在日 회사 회의 참석으로 인함)

`16.2.24일 이사회에서 저성장 및 불경기 국면에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익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경영진 및 직원 평가안 마련 시 과도한 영업 목표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2.29일 이사회에서 美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트럼프 정권의 정책 불확실성,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불안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예년대비 보수적 수준의 경영 계획이 수립 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리스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단결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유지, 제고책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평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101.8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60,454,839	
기본금	37,354,839	월기본금 350만원 (`16.1~3월 주총일) 300만원 (`16.3 주총일~12월)
상여금		
기타 수당	17,1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6,000,000	선임사외이사(3~12월)/ 보상추 위원장(1~12월) 月수당 50만 * 1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3) 사외이사 성재호

(가) 활동내역

성재호 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1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6.2.24일 이사회에서 미얀마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국내 금융회사가 이미 미얀마 진출을 시작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고객 연체율 등이 외국계와 현지회사별로 격차가 큰 만큼

회사 이미지 및 건전성 지표 등 다방면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5.27일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현지법률, 금융 관행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현지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성재호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6년 중 총 110.7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2,600,000	
기본금	37,354,839	월기본급 350만원 (`16.1~3월 주총일) 300만원 (`16.3 주총일~12월)
상여금		
기타 수당	10,6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4,645,161	감사추 위원장(3~12월) 月수당 50만 * 9회 (3월 주총일~12월)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4) 사외이사 이성환

(가) 활동내역

이성환 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7회, 보상위원회

2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6.3월 사외이사 신규 취임)

'16.7.26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이 일시에 제/개정 되는 만큼 각 규정의 지정 사항에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2.29일 이사회에서는 2017년 경영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1년전 경영목표 수준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객관화 된 시장/경제 지표와 회사 경영 목표 수준을 연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변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성한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5년 중 총 78.2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36,663,458	
기본금	27,870,968	월기본금 300만원 ('16.3 주총일~12월)
상여금		
기타 수당	7,5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292,490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사외 이사명	감사 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사추위)		시간 (Hour)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김경림	2	2	-	-	1	1	2	2	1	1	28.0
김동환	12	12	3	3	6	6	2	2	3	3	110.7
박평조	12	11	-	-	7	7	4	4	-	-	101.8
성재호	12	12	11	11	-	-	-	-	4	4	110.7
이성한	8	8	7	7	-	-	2	2	-	-	78.2

※ 김경림 이사 : `16.3.23일 퇴임, 이성한 이사 : `16.3.23일 신규 선임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최초선임일자	`13.3.27	`14.3.31	`15.3.26	`16.3.23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신임사외이사 대상 신한카드 경영현황 보고	신임 사외이사 대상 당사 현황 소개 (`16.3월)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나. 외부감사 현황 보고	신한카드 외부감사 현황 (`16.8월)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2016년 이사회 워크샵	11/11일(2시간), `17년 경제전망, 경영전략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교육 시간	2.5	2.5	2.5	4.5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지원 내역
----	---------------	-----	-------

이사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금융회사 등	선임 전	선임 후
김동환	-	-	-	無	無
박평조	-	-	-	無	無
성재호	-	-	-	無	無
이성한	-	-	-	無	無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 함으로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16.4.1 ~ 2017.3.31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청구당/그룹사별 상이, 신한카드: 총금액의 20.82% 분담)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특약 사항 : 피보험회사 중 신한카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바. 사외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의 연임(17.3월 정기주총 시 6년으로 변경 예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임원후보추천/보상/리스크관리/감사 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사외이사 본인, 상호간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운영 부서장 (전략기획/인사/리스크관리/감사팀장)에 의한 평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이사 전원 및 소속 위원 전원에 의해 진행 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이사로서의 경험과 지식 등), 직무공정성(공정한 직무수행 정도 등), 윤리책임성(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충실성(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할애 등)에 대해 5 등급 절대평가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는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 · 기준 · 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사외이사,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평가 결과

2016년도 신한카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역시 운영 및 역할 면에서 매우 우수하게 관리 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해당 평가는 2017.1.9 ~ 1.20일 서울매니지먼트社를 통해 우편을 통한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외이사 평가는 본인(30%)/사외이사間(60%)/직원(10%)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평가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참여 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는 이사 전원 및 소속 위원에 의한 평가로 진행 되었습니다.

② 개선 방안

- 개선 방안 : 향후에도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예정입니다.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박평조 선임사외이사 (‘16.3.23일 이사회 선임, 임기:‘16.3.23~‘17년 개최 정기주총일)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안건이 개최일 2주전에 사외이사진들에게 통보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2017년도 경영계획(안) 수립 전, 이사회워크샵 실시를 요청하여 ‘16.11.11일 개최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전략기획팀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부서원 15명
- 지원내역 :
 - ①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② 이사회 등의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③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④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 지원 및 제반 업무 등
 - ⑤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 실시
 - ⑥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 ⑦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 위	경력
소재광	2012.3.28	2014.3.31	24개월	리스크관리위 (`12.3월~`15.8월) 사추위 (`12.3월 ~`14.3월)		신한금융 지주회사 부사장 (`12년~`15년)
김동환	2013.3.27	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47개월	감사위 (`13.3월 ~`16.3월) 보상위 (`15.3월~ `16.3월) 리스크관리위 (`16.3월~현재) 임추위(사추위) (`16.3월~현재)	감사위원장 (`15.3월~ `16.3월) 리스크관리 위원장(`16.3월 ~현재)	한국금융 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박평조	2014.3.31	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35개월	리스크관리위 (14.3월~현재) 보상위 (15.3월~ 현재)	보상위원장 (15.3월~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
성재호	2015.3.26	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23개월	감사위 (15.3월~ 현재), 임추위(사추위) (15.3월~현재)	감사위원장 (16.3월~현재)	성균관대 교수
이성한	2016.3.23	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11개월	감사위 (16.3월~ 현재) 보상위 (16.3월~ 현재)	-	국제금융 센터 前원장

※ 소재광 이사는 '12.3.28~'14.3.31 사외이사, '14.3.31~'15.8.22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운영 등 그룹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4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붙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2004. 5. 10 제정, 2016.8.1 개정)

<붙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2004. 5. 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검증)

-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와 자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의하면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⑤ 경영승계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고,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지주회사는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위성호 사장을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중임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23일 당사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6.8.1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8.23	대표이사 선임 결의	제3차 정기이사회 제4차 임시주주총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지배구조법 제5조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성호 사장을 2016년 8월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중임 추천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위성호 후보자는 30여년간 은행, 지주, 카드사에 근무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영업, 인사, 기획, 지주회사에서는 통합 기획, HR,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성호 후보자가 Big Data 경영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신한카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업무 추진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책임자로 평가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대표이사 후보군 관련 지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6명의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HR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16명	2016년 5월 19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H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R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핵심인재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R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HR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HR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6.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3.1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3.24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5.1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7.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8.1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안) 심의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10.25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6.12.2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2016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12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16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데이터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말 기준)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6년 3월 24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동일 개최된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6.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	위원장	2015.3.25	2016.3.24
권태은	사외	위원	2015.3.25	2016.3.24
김석원	사외	위원	2015.3.25	2016.3.24
이상경	사외	위원	2015.3.25	2016.3.24
고부인	사외	위원	2015.3.25	2016.3.24
이만우	사외	위원	2015.3.25	2016.3.24

<2016.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	위원장	2016.3.24	2017.3월 정기주주총회일
고부인	사외	위원	2016.3.24	2017.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만우	사외	위원	2016.3.24	2017.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 철	사외	위원	2016.3.24	2017.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흔야	사외	위원	2016.3.24	2017.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12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16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데이터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2.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3.14(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3.2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장 선임

2016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5.19(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후보군 선정
다. 3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7.21(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8.18(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10.25(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6.12.28(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1. 이사 성명	한동우	고부인	이만우	박철	이흔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5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이사회 안건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상근감사위원의 사전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사항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상 상근감사위원은 위임사항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위원회는 2016년 12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 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 제4항,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5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상법 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하거나, 이사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예산의 배정 및 전용, 일정 금액 이상의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 제규정의 개폐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16년 중 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 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제2차 감사위원회는 지주 연결기준 감사 업무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주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제29기('14.1.1~12.31)부터 제31기('16.1.1~12.31)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 중 당사와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업무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비감사 업무 계약은 없습니다.

내용	연간보수	투입시간 (2016년12월기준)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664(백만원)	5,196(시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삼정회계법인 및 제휴 회계법인인 KPMG와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은 지주회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주회사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하며, 외부감사인 간 비감사업무에는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비감사업무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계획/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일상감사 업무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 수행 전반 및 일상감사 등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 중이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6년 총 4회(1차 임시, 2차 정기, 3차 정기, 4차 정기) 감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상

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2017년 2월 22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6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였으며, 결의한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등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 현재 삼정회계법인은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초 완료 예정으로 공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내부회계관리부서로부터 결산실적을 보고받아 심의 중이며, 2016년 3분기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결산 실적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 부서의 감사위원회 분기별 결산실적 보고 시 외부감사인이 결산실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토록 요청하여 2016년 11월 11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 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8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2016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보고내부통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7년 2월 8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관련 규정과 모범기준에 근거, 재무제표 왜곡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설계된 통제활동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바)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연말 감사팀의 익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 결의하고,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5년 12월 10일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고, 2016년 5월 27일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와 2016년 8월 23일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6년 11월 11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진행상황을 심의하였으며, 2017년 2월 8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연간 감사업무추진실적을 심의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2016년 3월 23일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 결과, 정기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5회(1차 임시, 2차 정기, 4차 임시, 3차 정기, 5차 임시)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결과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감사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이사회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2016년8월1일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의 반영을 위해, 2016년 7월26일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자) 상근감사위원의 전략과제 수립 및 평가

감사위원회는 2014년 2월 26일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상근감사위원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의 전략과제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안)을 결의하였고, 2017년 2월 8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상근감사위원의 주요 실적을 심의하여 2016년 상근감사위원 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차)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7년 2월 22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 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이를 조직과 업무분장상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카)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내부통제기준 제11조)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활동계획을 보고받아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2016년 2월 24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활동계획을, 2017년 2월 22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보고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회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정관 제38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2016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성재호 이사와 이성환 이사가 임기 '16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성재호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성환 감사위원, 이석우 상근 감사위원을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 되었습니다.

본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분리선임) 및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재선임한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감사위원 후보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 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6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2명의 사외이사에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을 포함 총 3명으로 구성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료출신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경력
김동환	사외	위원장	'13.3.27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화	상임	상근감사위원	'14.3.31	'16.6.2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성재호	사외	위원장(현)	'15.3.26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차장
이성한	사외	위원	'16.3.23	'16년 결산기 정기주총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과테말라 KSP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이석우	상임	상근감사위원	'16.6.3	'17년 결산기 정기주총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고려휴먼스(주)대표이사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총 11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감사위원 모두 100% 참석 하였습니다. 결의사항 14, 보고 및 심의사항 14 등 총 28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토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 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 감사위원회는 2015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 제30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017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중 감사위원회는 2015년 감사결과 보고, 2015년 결산실적 심의보고,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2015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 2016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2016년 감사 진행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성재호 감사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서 법률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측면에서 회계 관리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 주요 소송,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성한 감사위원은 재경직, 금융직 관료 경험을 통한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 현황 및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관점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전문 지식 및 타 회사의 관료직 활동 경험 등을 바

탕으로 그룹 회계 관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방안 및 내부통제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은 재무전문가로 금융직 관료 경험을 통한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 현황 및 내부통제, 사전적 Risk 통제를 통한 건전 경영 확보, 선제적 자체점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2.4 (14:00~14:30) / 안건 통지일 : 2016.1.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5년 결산실적 심의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④ 2015년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5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6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3건, 보고 및 심의사항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5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이 상근감사위원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6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 건과 관련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장은 감사팀원 역량 강화가 중요한 항목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의 건전 경영 확보 지원, 정도 경영 체계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2016년도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6.2.24 (09:30~10:00) / 안건 통지일 : 2016.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5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5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30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참석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3건 등 총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제30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용 중 카드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응방안 수립 뿐만 아니라 동향파악 등을 통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2016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3.23 (15:30~15:50) / 안건 통지일 : 2016.3.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라) 2016년도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3.23 (17:50~18:00)/ 안건 통지일 : 2016.3.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이성환 감사위원은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계속 담당할 성재호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이 동의를 표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마) 2016년도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6.5.27 (08:30~09:00) / 안건 통지일 : 2016.5.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환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6년 감사 진행상황 보고(1월~5월)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1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장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바) 2016년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7.26 (08:30~08:40)/ 안건 통지일 : 2016.7.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환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 3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1건 등 총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6년 제 3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사) 2016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6.08.23 (10:50~ 11:10)/안건 통지일: 2016.8.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6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6년 감사 진행상황 보고(6월~8월)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2건 등 총 3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6년 제 4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16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은 2016

년 상반기 결산실적 검토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아)2016년도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10.31(09:00~09:10)/ 안건 통지일 : 2016.10.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제5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6년 제 5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자) 2016년도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6.10.31(09:50~10:10)/안건 통지일 : 2016.10.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이성한 감사위원은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계속 담당할 성재호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이 동의를 표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차) 2016년도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6.11.11(15:00~15:20)/안건 통지일 : 2016.10.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6년 3분기 재무제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6년 감사 진행상황 보고(9월~11월)	특이의견 없음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보고 및 심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고 및 심의안건인 2016년 3분기 재무제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장이 외부 감사인과 내부감사인의 협업을 통한 미션수행과 감사위원회 활동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카) 2016년도 제7차 임시 감사위원회:2016.12.29 (11:45~12:00)/안건 통지일 : 2016.12.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7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6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7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성환 감사위원이 적발 건수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신한카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팀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감사팀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장 1명, 부부장 4명, 차장 6명, 과장 3명, 대리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건전 경영 확보 지원,정도 경영 체계 정착,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외 신인도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연초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보고내용]

일자	대상	보고 내용
2.4	회계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2.11	준법감시팀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평가 보고
2.15	자금팀,회계팀 등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2.17	준법감시팀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2.24	재무기획팀 등	2015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연 2회	지점 (8점)	지점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연 4회	대손상각 심의	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결과 보고
5.30	체크영업팀	체크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5.30	리스크관리팀	리스크관리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연 5회	내부감사협의제도	FDS 활용 적정성,제휴업체 관리,공시업무 적정성 등
9.7	채권기획팀 등	채권추심 특별감사 결과 보고

9.12	준법감시팀 등	정도영업 감사 결과 보고
10.27	재무기획팀 등	재무기획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7	VIP 영업팀	VIP 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7	CRM 영업팀	CRM 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9	ICT 기획팀 등	ICT BU 종합감사 결과 보고
12.22	신사업팀	신사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2.23	총무팀 등	자산실사 결과 보고
12.29	리스크관리팀	제3자 리뷰 수행 결과 보고

8.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 설정/초과승인, 리스크관리규정 제·개정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중심으로 직·간접 지도·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2016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2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문과 유기적인 보고/통제/협의 구조하에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통한 주요사항 결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회사의 리스크 철학 및 그룹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원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①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②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 ③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④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⑤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 ⑥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 ⑦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준수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평가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리스크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본한도 입안 및 한도초과시 사후대책,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신설 및 변경, 리스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와 협의토록 하여 그룹차원의 통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재무/사업계획 수립시 위험수준을 감안한 최대 자산성장 가능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확정된 재무/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가용자본, 위험자본총량, 완충자본을 포함한 위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신한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가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리스크 한도 근접時 지주사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도 유형, 한도조정 사유 등에 따라 지주사 또는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해외 사업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 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투자 관련 전략적 Buffer를 리스크한도로 별도 설정하여 한도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크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을 규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과 리스크관리 조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구체적 리스크관리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리스크관리업무 규칙/ 종합 위기관리규칙/ 리스크 사전사후 점검운영규칙으로 세분화되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제정 및 개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그 밖에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등을 보고 받아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재직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6.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경림	사외이사	위원장	'11.3.22	'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3.31	
임영진	비상임	위원	'16.2.4	

<2016.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동환	사외이사	위원장	'16.3.23	'16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3.31	
임영진	비상임	위원	'16.2.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6년에는 총 7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86%로 참석율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6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자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16년 제2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동환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16년 제3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해외법인에 대한 자본금 증자를 결의하였고, '16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당사 「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16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7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및 리스크관리BU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등 정기 보고사항에 대해 분기 단위로 보고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2.24일(09:00 ~ 09:40) /
 안건 통지일 : 2016.2.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경림	박평조	임영진	
1. 위원 성명	김경림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5년 4분기末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미얀마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5년 4분기末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종합위기관리규칙 등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案)을 보고받았습니다. 임영진 위원은 미얀마 진출 사업/재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3개업권이상 신용대출보유자 등 개인카드 잠재리스크군의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2016년도 제2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3.23일(17:40 ~ 17:50) /
 안건 통지일 : 2016.3.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불참	가결

2016년도 제2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동환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2016년도 제3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5.27일(09:00 ~ 09:30) /
 안건 통지일 : 2016.5.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2016년 1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	특이의견 없음			

니터링 보고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미얀마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불참	가결

2016년도 제3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신용카드/할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내용의 안건 및 미얀마 소액 신용대출 사업(MFI) 개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해외 진출時 영업 부문은 현지화가 필요하나, 리스크 부문 책임자는 본국 출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미얀마 현지화 성공 관건은 예금 취급임을 감안하여 예금보험제도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과 사업성 악화에 따른 Exit 전략을 미리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라) 2016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7.26일(10:10 ~ 10:20) /
안건 통지일 : 2016.7.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등을 당사 리스크관리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마) 2016년도 제5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8.23일(10:10 ~ 10:30) /

안건 통지일 : 2016.8.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6년 2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6년도 제5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2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다중채무자 잔액 비중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고 향후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고위험군 및 중점관리업종의 정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바) 2016년도 제6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11.11일(15:00 ~ 15:20) /

안건 통지일 : 2016.10.2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6년 3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6년도 제6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3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은 카드론, 할부금융 등

금융상품 자산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다각도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사) 2016년도 제7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6.12.29일(10:20 ~ 10:40) /
 안건 통지일 : 2016.12.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임영진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2017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리스크관리BU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6년도 제7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7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리스크관리BU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위험성향을 51.9%로 설정한 점 및 가용자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신용리스크 한도 증가 원인과 주택관련 대출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 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원 등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이사회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15년 3월 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상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인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박평조 이사가 2017년 3월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을 재임하게 되어 추가 재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머지 위원은 현재 재임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보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며, 당사 이사회 및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한 당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을 확정하며, 경영진 평가체계의 세부사항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결정하며, 성과보수를 받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회규정 제 3조,4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에 의거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기준으로 당사 보상위원회는 총 3인(박평조, 이성한, 임영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인 박평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 사외이사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상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중 박평조 위원과 임영진 위원은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수 체계와 리스크관리 측면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한 위원이 선임되기 이전인 2016년 3월 주총 이전에는 사외이사인 김동환 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2) 구성원

<2016.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여부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여부
박평조	사외	위원장	2015.3.26	2016.3.23		해당
김동환	사외	위원	2015.3.26	2016.3.23		
임영진	비상임	위원	2016.2.4	`17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해당	해당

* 임보혁 이사(위원) `16.2.3일 사임으로 임영진 이사 선임

<2016.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여부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여부
박평조	사외	위원장	2016.3.23	`17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해당
이성한	사외	위원	2016.3.23	`17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임영진	비상임	위원	2016.2.4	`17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해당	해당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당사 보상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 감독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2월 24일 개최된 제1회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2017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

하여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이를 금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제1회, 제4회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 평가 및 경영진 등 보상체계(안)의 설계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2017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에서 2016년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관련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2016년도 제1회, 제2회 및 제4회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2017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 개최된 제2회 보상위원회에서 2015년도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상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임원(경영진 등) 및 금융투자업무대상자에 적용
-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보상위원회 규정 제 6조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24일 개최된 제1회 및 7월 26일 개최된 제4회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사 변동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7명	사장, 부사장, 선임상무, 상무
특정업무 종사자	0명	해당사항 없음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당사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는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나 2016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사례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설명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16년 보상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 2016년 경영진 등 보상체계 및 기준 확정, 2015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2015년도 연차보상평가(안) 결의에 대한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보상위원회 개최시마다 개별 위원들에게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여 보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16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 : 2016.2.24 (수)

[안건통지일 : 2016.2.12(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박평조	김동환	임영진	
1. 위원성명	박평조	김동환	임영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6년 이사 아닌 경영진 보수운영	참석	참석	참석	
4. 의결안건				
가. 2016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년 경영진 등 보상체계 및 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회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고안건 1건과 결의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주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16년도 이사 아닌 경영진의 보수운영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경영진 등의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나) 2016년도 제2회 보상위원회 : 2016.3.23 (수)

[안건통지일 : 2016.3.9(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박평조	김동환	임영진	
1. 위원성명	박평조	김동환	임영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6년 사내이사 보수 운영	참석	참석	참석	

4. 의결안건				
가. 2015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5년도 연차보상평가(안)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회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고안건 1건과 결의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주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16년도 사내이사 보수운영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2015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연차보상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보상체계가 모범규준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 2016년도 제3회 보상위원회 : 2016.3.23 (수)

[안건통지일 : 2016.3.9(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1. 위원성명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참석	참석	-	
4. 의결안건				
가.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	가결

제3회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중 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평조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라) 2016년도 제4회 보상위원회 : 2016.7.26 (화)

[안건통지일 : 2016.7.12(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1. 위원성명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6년 경영진 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	참석	참석	참석	
4. 의결안건				
가. 2016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년 경영진 등 보상체계 및 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회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고안건 1건과 결의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영진 직위 신설로 인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하였으며, 지주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해당 경영진에 대한 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4) 평가

보상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 제4항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9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1월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이를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게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① 운영평가: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경영진 등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CEO 및 경영진은 담당 업무에 따라 그룹KPI, 회사KPI, 담당업무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룹·회사·담당업무의 재무/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계량적 지표와 연계된 평가를 배제하고 담당 업무 전략과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전체 및 개인성과 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 등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 담당그룹 KPI 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를 포함하여 개인의 업적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전사 성과가 직접적으로 장기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단기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정책

성과보수액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수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상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감독기관의 징계를 받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수가 부여되며, 4년간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하여 지급하는 보수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변동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결정되며, 직위별로 배수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동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

로 운영되며, 전체 변동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이연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은 성과와 연동하여 4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임직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과공유 등을 위해 ESOP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매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은 108.8억원을 출연하여 ESOP 260,417주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액이 변동하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급여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 범위가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5조에 따라 임직원이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6년도 당사의 보수체계는 전년도의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명,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 차감전순이익(B)	비율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A/B)		
전년도 (2015년)	2,770	8,220	33.7%	3,162	0.88
당해년도 (2016년)	2,813	8,781	32.0%	2,897	0.97

주1)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2011,12년에 3개년분이 부여되어 회사의 과거 성과(2011년~2015년)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경영진 등의 장기성과급과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 포함됨.

주2) 그룹 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5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사원 등
전년도	보수총액	13	17	194	1,313	1,234

(2015년)	성과보수액	3	6	40	322	239
당해년도	보수총액	13	20	195	1,443	1,143
(2016년)	성과보수액	4	9	41	344	226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명,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5년)	경영진	6	16	21	1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6	14	21	1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경영진·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5년)	경영진	21	8	11	2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21	7	14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 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경영진	46	0	4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36	0	3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

*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16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17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 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16년말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현금	주식 ¹⁾	주식연계상품 ²⁾	기타 ³⁾
전년도 (2015년)	경영진	46	30	15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36	28	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경영진	46	13	16	12	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36	14	8	9	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주) 해당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5년)	경영진	-4	0	-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결산기준)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명,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경영진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6년)	경영진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제외

[첨부] 관련규정(붙임 1~7) 및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붙임 1) 신한카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hinhan Card Co., Ltd.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4.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5.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6.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7. 할부금융업무
8. 시설대여업무
9. 연불판매업무
10.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11. 어음할인업무

1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14. 지급보증업무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16.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17. 신기술사업금융업무
18. 벤처사업 관련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
19. 인터넷 및 기타 e-Business 관련사업(Hub - Portal Site 운영, 쇼핑몰 운영 등 포함) 및 투자업무
20.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및 투자업무
21. 통신판매업무
22. 보험대리점업무
23. 일반여행업
24. 환전업무
25. 카드의 제작대행업무
26. 부가통신업무
27. 광고업
28. 도, 소매업
29. 부동산임대업
30. 자동차 대여 업무
3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32. 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여 및 판매업무
33. 전 각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34. 기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등록하였거나 인·허가, 승인 등을 득한 업무
35.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영업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류로 한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⑥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 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수는 6억주 이내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 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중에서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본 조의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거나 또는 회사가 상환기간 중 상환 결정

- 을 한 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 9 조의 3 에 의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6 억주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총수와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이 발행된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일할배당에 의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비율로 신주의 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 2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2 억주, 제 3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5 억주, 제 4 호 및 제 5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12 억주, 제 6 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2 억주를 각 각 초과하지 못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4. 자금의 조달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③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등)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익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6.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주총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6.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한다.

제18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본 회사의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등

제25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 ④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②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본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3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거,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②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 33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제 3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및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 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이사회 권한위임)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38조 (감사위원회)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이상으로 한다.
-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준법감시인)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의 제④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제6장 계산

제40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3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적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 (사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 제3항은 이 정관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은 2012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회사”란「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 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6.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성과보상”이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1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3.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상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4.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2 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회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 및 신한금융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사항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사항
 7.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

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상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5.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④ 보상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5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16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제1항에 따

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2회째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선임되더라도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사외이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 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2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최대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 등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4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⑤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⑦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7조를 따른다.
- ⑧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8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운영한다.
- ② 이사회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제28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9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30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2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제33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34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근감사위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5장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등

제37조(기본원칙)

- ①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제38조(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39조(보상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0조(성과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 중 성과보상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상으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제4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한다.

제41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은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며,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하는 성과보상의 비율을 상당수준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③ 이연지급시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제42조(성과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

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현금보상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4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5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46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47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이사회사무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

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6. 감사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7.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8.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 체계의 주요 특성
 - 3. 회계연도 중 보상액(기본급 및 성과보상을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 4. 성과보상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5. 이연된 성과보상(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6. 이연된 성과보상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상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직급별 보상액 및 성과보상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상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8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4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한다.

제49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50조(공시방법)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51조 (경영진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52조(권한과 책임)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 2.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최고경영자 이외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53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최고경영자 아닌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54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최고경영자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최고경영자가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임기)

최고경영자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최고경영자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56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7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상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8조(경영진의 보상)

- ① 경영진의 보상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상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59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2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리스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3조(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4조(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5조(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兼營)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6조(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범은 2015.2.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범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제4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신입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제7항제1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붙임 3)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i) 대표이사 사장 및 (ii) 이사가 아닌 자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 (이사회 의 역할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3.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결원,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

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5호 '아'목 및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위임 및 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 결의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다.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 규정, PU(Performance Unit)운영규정

라.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마.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3.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
- 마.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바.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사.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 나. 이사와 본 회사간의 거래승인 및 이사의 경업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이사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마. 대표이사 사장의 '라'목 이외의 경영진 임면요청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 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 1건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 나. 1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건당 자기자본(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중 최근의 자기자본 기준, 이하 같음)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을 신규 출자하는 경우

라.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이외의 계약과 소송에 관한 사항

마.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재산의 차입에 관한 사항(단, CP, Call 차입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차입은 제외)

바.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사. 사채 모집에 관한 사항

아.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

(2) 제1단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단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제4단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 타

가. 관계법령·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라.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 하는 사항

마.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인사, 기타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 등)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이사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7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

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수의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사항,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7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 8 조 (해임 및 총원)

- ① 위원의 해임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의 미착,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일상감사사항 등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⑤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①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인 선임 및 해임 승인

마.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차.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 기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경영정보 요구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7 조 (감사업무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 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년도 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 20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감사보조조직)

-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9조는 회사의 상장 폐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의 설정 및 허용한도 초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6.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BIS비율 산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한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관한 사항
7.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8.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주요 변경사항중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함)
10.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2.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3.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이행 및 추인)

제5조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선이행(先履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 및 성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7) 보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해서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2. 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은 이 규정 제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최초의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성 명	종합 의견
김 동 환	적 합
박 평 조	적 합
성 재 호	적 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위 성 호



후보자	김 동 환	소속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32조 제2항 - 주식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정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금융, 경제 전문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 등급(4.5~5.0) - 매우 우수 / 4 등급(3.5~4.5) - 우수 / 3 등급(2.5~3.5) - 보통 / 2 등급(1.5~2.5) - 부진 / 1 등급(0~1.5) - 매우부진

후보자	박 평 조	소속법인	미마츠 기업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102조 제3항 - 주식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1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10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경영전문가 (미마츠기업(일본) 사장)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 등급(4.5~5.0) - 매우 우수 / 4 등급(3.5~4.5) - 우수 / 3 등급(2.5~3.5) - 보통 / 2 등급(1.5~2.5) - 부진 / 1 등급(0~1.5) - 매우부진

후보자	성 재 호	소속법인	성균관대학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32조 제2항 - 주식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정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법률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 등급(4.5~5.0) - 매우 우수 / 4 등급(3.5~4.5) - 우수 / 3 등급(2.5~3.5) - 보통 / 2 등급(1.5~2.5) - 부진 / 1 등급(0~1.5) - 매우부진